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합5678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이지은, 이하나

2. C

3.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1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2. 20.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E에게 별지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위 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가.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2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2. 20.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E에게 별지2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위 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2, 3항 및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1, 2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1. 피고 B은 E에게 별지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위 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은 E에게 별지2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위 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2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에게, 발행일 2019. 11. 18., 지급기일 2020. 2. 15.,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액면금 1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2020. 1. 17.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20년 제5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라 한다).

나. E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200,000주 중 188,000주(1주의 액면가액 5,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0. 2. 20.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주식을 대금 1,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에게 별지2 기재 주식을 대금 1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의 청구들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 1) E은 피고 B, C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원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 B에 대하여 E에게 위 각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할 것을 구한다.
- 2) E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을 대위하여 피고 C, B에 대하여 E에게 위 각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3 내지 6회 변론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2.항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2. 20.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E에게 별지2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와 같은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인 2020. 2. 20. 무렵 피고 회사의 주식 188,000주(액면가 940,000,000원)와 평창군 H I호의 지분 200분의 11)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1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42,584,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의 주식 188,000주의 가액이 1,175,000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E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E과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은 800,000,000원인데(2019. 12. 30.자 주주명부에 의하더라도 E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188,000주는 액면가액 5,000원으로 계산되어 9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위 주식을 1,000,000원에 인수하였다는 것인바, 주식매매가액이 액면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가일뿐더러, 위 매매대금 1,000,000원이 실제 E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②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투자를 원하는 자들이 피고 B이 주식을 보유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실제 투자자들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양도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 내지 제시한 사정만으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E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와 같은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의 청구들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 1) E은 피고 B, C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원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는 E에게 위 각 주식 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E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E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E에게 위 각 주식 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E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E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따라서 E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본래의 소유자인 E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E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²⁾.

다. 채권자대위에 기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E은 2020. 1. 18.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미리 밝혔던 점, ② E은 2020. 2. 18.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94%를 피고 B에게 1,000,000원에 양도하고, 4%를 피고 C에게 100,000원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③ 이후 E이 위 이사회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2020. 2. 20. E과 피고 B, C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기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는 피대위권리(E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숙, 판사 신유리, 판사 이학영

별지1

대상주식의 표시

채무자 (주소 : 서울 관악구 , 주민등록
번호 :)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금액 : 5,000원) 188,000주 중 160,000주.
끝.

별지2

대상주식의 표시

채무자 [주소 : 서울 관악구 , 주민등록
번호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금액 : 5,000원) 188,000주 중 8,000주. 끝.

1) E은 2017. 10. 30. 위 부동산의 지분을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직접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을 뿐, E을 '대위하여'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